

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

변필성 | 국토연구원 연구위원

머리말

(Taylor & Wren, 1997).

(Haugh, 2005).

1)

(handicap)

(Neighbourhood Renewal
Unit, 2001; McCabe & Hahn, 2006)

2)

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

1. 사회적 기업 및 관련 용어 정의

(Young, 2006).

(< 1 >).

(2010)

(2010; 2011)

2 1

, 2010).

2)

(community business)

(, 2010).

1998

, 2000

(, 2007).

2007). 2003

(, 2007).

, 2007; , 2009).

3

2007

(, 2009).

(, 2007; , 2009).³⁾

3.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과 인증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

.⁴⁾ 2010 12

3) 1980 (Defourny & Nyssens, 2008) 1990 EU (, 2007).

<표 1>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

인증요건	근거 조항
① 다음과 같은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민법」에 따른 법인·조합,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,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공익법인,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 제2호의 사회복지법인,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의 생활협동조합, 그 외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	「사회적 기업 육성법」 제8조 제1호, 동법 시행령 제8조
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	동법 제8조 제2호
③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해야 함 그리고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인 경우,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50%(2013년 12월 31일까지는 30%) 이상일 것 •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의 사회서비스 제공인 경우,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50%(2013년 12월 31일까지는 30%) 이상일 것 •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인 경우,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30%(2013년 12월 31일까지는 20%) 이상일 것 •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,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지역거주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지역거주 취약계층의 비율이 20% 이상일 것 • 이상의 기준으로는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, 고용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함 	동법 제8조 제3호, 시행령 제9조
④ 이해관계자(서비스 수혜자, 근로자 등)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함	동법 제8조 제4호
⑤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이 지출한 총노무비(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지칭)의 30% 이상이어야 함	동법 제8조 제5호, 시행령 제10조
⑥ 「사회적 기업 육성법」 제9조에 따라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함	동법 제8조 제6호
⑦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, 이윤의 2/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함 (「상법」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만 해당)	동법 제8조 제7호

4)

(, 2009).

5)

(Haug, 2005).

(4 50%)

(www. (< 2>),

socialenterprise.go.kr)

3 3

2

3 3

(www.socialenterprise.go.kr).

(< 2>).

<표 2> 인증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

지원내용		근거 조항
①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·기술·세무·노무·회계 등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을 수행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상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고, 해당 기관이나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	「사회적 기업 육성법」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12조
② 교육훈련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, 사회적 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	동법 제10조의 2
③ 시설비 등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가 및 지자체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·시설비 등을 지원·융자하거나 국·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음 	동법 제11조
④ 공공기관의 우선구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장은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,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함 	동법 제12조
⑤ 조세감면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가 및 지자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「법인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 국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료 및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	동법 제13조
⑥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사회적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, 운영경비, 자문비용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^{제4)}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에게 재정지원을 수행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	동법 제14조
⑦ 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가 및 지자체는 사회적 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·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「법인세법」, 「소득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 	동법 16조

: " " (2 4). " (2 5).

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과 과제

1.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육성 가능한 사회적 기업

9

(< 1>).

(:

)

(Haugh, 2005).

16

(2010)

“ (25.2%, 17.0%)

... () ... 2.

, 3.

, 4.

...”

2.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책

6)

7)

(2010)

10.4%).
(13.0%,
, 2010).

CDFI(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) , CITR(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)

(CDFI

CDFI CITR
(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,)

CDFI CITR

CITR

6)

, 2010
(, 2010).

7)

(pro bono)

(www.socialenterprise.go.kr).

(, 2007).

(www.hmrc.gov.uk/manuals/citmanual).

3.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의 선결과제

8)

(Haugh, 2005).

8)

(2).

5

참고문헌

김정원. 2009.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?. 아르케.

노동부. 2010. '지역형 사회적 기업' 전국적으로 도입: 대통령 주재,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회의 개최. 노동부 보도자료 2010년 6월 11일.

농림수산물부. 2010. 농어촌 활력의 중심,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뜬다. 농림수산물부 보도자료 2010년 4월 14일.

농림수산물부 · 고용노동부. 2010. 농어촌 일자리 창출, 사회적 기업이 앞장선다: 농림수산물부-고용노동부 MOU 체결. 농림수산물부 ·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0년 10월 26일.

오내원 · 이상진 · 김광선 · 김창호 · 권인혜. 2010.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 연구(1/2차 연도). 한국농촌경제연구원.

임혁백 · 김윤태 · 김철주 · 박찬웅 · 고희면. 2007.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: 한국형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 모색. 송정.

지식경제부. 2010. 2010년도 「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」 안내자료.

행정안전부. 2010. 행안부, 지역풀뿌리형 사회적 기업 육성대책 마련: 2013년까지 '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' 1,840개 육성.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0년 7월 16일.

_____. 2011. 지역풀뿌리형 「마을기업」 500개 집중 육성: 2013년까지 1,000개 육성, 안정적 일자리 1만 개 창출.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1년 1월 31일.

Defourny, Jacques & Marthe Nyssens. 2008. Social Enterprise in Europe: Introduction to an Update. in Jacques Defourny & Marthe Nyssens(eds). Social Enterprise in Europe: Recent Trends and Developments. EMES European Research Network Working Paper no.08/01 pp4-12.

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. 연도미상. Questions and Answers relating to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(www.bis.gov.uk에서 구독 가능).

Haugh, Helen. 2005. "The role of social enterprise in regional development". *International Journal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* vol.2, no.4. pp346-357.

McCabe, Angus & Sangjin Hahn. 2006. Promoting Social Enterprise in Korea and the UK: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, Alternative Welfare Provision or a Means to Welfare to Work?. *Social Policy & Society* vol.5, no.3. pp387-398.

Neighbourhood Renewal Unit. 2001. A New Commitment to Neighbourhood Renewal, National Strategy Action Plan. London : NRU.

Taylor, Jim & Colin Wren. 1997. "UK Regional Policy: An evaluation". *Regional Studies* vol.31, no.9. pp835-838.

Young, Dennis R. "Social enterprise in communit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USA: theory, corporate form and purpose". *International Journal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Management* vol.6, no.4. pp241-255.

사회적 기업 홈페이지. www.socialenterprise.go.kr.

영국 HM Revenue & Customs의 CITR 매뉴얼 홈페이지. www.hmrc.gov.uk/manuals/citmanual.